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제정 2019.4.10 특허청 훈령 제934호]

[개정 2019.5.31 특허청 훈령 제938호]

[개정 2019.11.4 특허청 훈령 제958호]

소관부서 : 특허심사기획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특허심사과(이하, 특허심사팀을 포함한다)가 소관 기술분야의 심사 및 동향조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심사과 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과장(이하, 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보좌하고, 특허심사과 내의 의사소통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이하 ‘특허팀’이라 한다)의 구성, 기능, 관리 등 운영에 대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특허심사기획과,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심사국’이라 한다) 소속의 특허심사 및 국제특허출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심사과에 적용한다.

② 특허팀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팀”이란 특허심사과의 담당 기술분류 중 동일하거나 인접한 산업기술군 또는 제품군에 속하는 기술분류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그룹을 말한다.
2. “특허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특허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3. “심사처리계획”이란 특허청이 수행하는 특허 심사업무의 목표 처리

물량, 목표 처리기간 및 심사품질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립하는 정기적인 계획을 말한다.

- 제4조(구성)** ① 각 특허팀은 소속 특허심사과가 담당하는 기술분류의 출원량을 고려하여 특허팀장이 원활하게 통솔할 수 있는 적정 인원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② 심사국장은 소속 특허팀이 담당하는 기술분야의 출원량의 증감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③ 심사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심사기획국장 및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 ④ 심사과장은 특허팀별로 특허팀원이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역할)** ① 각 특허팀은 특허팀원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특허팀 소관 기술분류의 심사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 해당 기술분야의 심사에 필요한 법률 및 기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소속 심사관의 심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② 각 특허팀은 특허팀 내에서 파악된 품질취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심사품질 개선여부를 자체 검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순환적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2장 특허팀장

- 제6조(자격요건 및 선임)** ① 각 특허팀에는 소관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해당 특허팀의 심사품질 관리를 총괄하는 특허팀장을 둔다.
- ② 각 심사과의 과장은 심사과 내 특허팀 중 하나의 특허팀장을 겸할 수 있다.
- ③ 각 심사국의 국장은 특허팀의 기술분류에 적합하고, 심사역량과 리더십이 우수한, 심판관 자격요건을 갖춘 서기관 중 1명을 각 특허팀의 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심사과 내에 위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 책임심사관 이상 사무관 중 1명을 특허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팀장 임명 대상자가 비심사부서근무(단, 심판관, 심사품질관, 소송수행관 등 심사·심판 관련 업무는 제외) 또는 유학, 파견 등 휴직의 사유로 12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복직한 경우에는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심사 적응 정도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소속 심사국장이 특허팀장 임명 대상자의 역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특허팀장은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팀원이 수행하는 심사 건에 대하여 점검한다.

② 특허팀장은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따른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 생략 여부의 변경을 심사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특허팀장은 소속 특허팀원의 성과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기간 동안 파악한 팀원의 종합적인 심사역량에 관한 의견을 심사과장에게 제시한다.

④ 특허팀장은 소속 심사과의 품질관리협의체에 참석하여 과 운영사항 및 품질관련 쟁점사항 등을 심사과장과 협의한다.

⑤ 특허팀장은 특허팀 내 품질 취약부분을 상시 발굴하여 특허팀 심사품질 제고 시책을 마련 및 운영한다.

⑥ 특허팀장은 산업계 기술 동향과 특허 심사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필요 시 산업계와 공유한다.

⑦ 특허팀장은 심사관 대상 각종 경연과 관련하여 소속 특허팀원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역량 평가에 참여한다.

⑧ 특허팀장은 심사협의체의 심사장으로서 협의에 참여하는 부심 지정, 협의 내용 조정·관리 등 실질적인 협의심사의 품질 관리를 수행한다.

⑨ 특허팀장은 심사국장 또는 특허심사과장이 요청하는 기타 특허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심사업무량 산정) ① 특허팀의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은 심사처리계획에 따른다.

② 심사국장은 특허팀원 구성에 따른 특허팀장 간의 심사품질제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는 조정 전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③ 심사과장은 특허팀원 구성에 따른 특허팀장 간의 심사품질제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소속 심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후 소속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는 조정 전 특허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심사업무량 합계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제9조(역량 관리 및 해임) ① 심사국장은 반기별로 특허팀장의 소통 역량을 진단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사과장은 반기별로 특허팀의 운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심사국장에게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심사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 특허팀장의 해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④ 심사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임 검토대상 특허팀장의 경우 6개월간의 역량강화 기간을 부여한 후, 재진단하여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최종 해임한다.

⑤ 심사국장은 제3항에 따라 특허팀장에 대하여 해임을 검토하거나, 제4항에 따라 최종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심사국에서 특허팀장 역량 진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심사과장으로 한다.

⑥ 특허팀장 역량 진단 위원회는 해임 대상으로 상정된 특허팀장의 해임 여부 심의 시 당사자에게 소명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특허팀장이 해임된 경우 각 심사국의 국장은 특허팀장의 변동 사항 및 해임 사유 등을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특허팀장은 해임된 날로부터 1년 간 특허팀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0조(역량강화) 각 심사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임 검토대상 특허팀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역량강화 기간 동안, 해당 특허팀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제3장 특허심사기획국

제11조(생활용품심사과) ① 생활용품심사과에는 생활가구기술분야 특허팀, 생활잡화기술분야 특허팀, 스포츠레저기술분야 특허팀, 시스템창호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식품생물자원심사과) ① 식품생물자원심사과에는 식품제조기술분야 특허팀, 식품보존기술분야 특허팀, 생물자원기술분야 특허팀, 식물자원기술분야 특허팀, 동물자원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식품생물자원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주거기반심사과) ① 주거기반심사과에는 주거환경기술분야 특허팀, 주거구조기술분야 특허팀, 주거건축기술분야 특허팀, 주거생활기술분야 특허팀, 주거안전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주거기반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가전제품심사과) ① 가전제품심사과에는 냉동냉장기기기술분야 특허팀, 세탁건조기기기술분야 특허팀, 사진인쇄장치기술분야 특허팀, LED광전소자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전제품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국제특허출원심사1팀) ①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에는 국제특허출원심사 화학기술분야 특허팀, 국제특허출원 전기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6조(국제특허출원심사2팀) ①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에는 국제특허출원심사 기계기술분야 특허팀, 국제특허출원 통신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융·복합기술심사국

제17조(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①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에는 빅데이터서비스기술분야 특허팀, 머신러닝기술분야 특허팀, 영상음성인식기술분야 특허팀, 데이터입출력기술분야 특허팀, 데이터전송기술분야 특허팀, 데이터제어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사물인터넷심사과) ① 사물인터넷심사과에는 사물인터넷서비스기술분야 특허팀, 사물인터넷단말 특허팀, 사물인터넷매니징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물인터넷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9조(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①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에는 바이오시스템 기술분야 특허팀, 바이오응용기술분야 특허팀, 생물분석기술분야 특허팀, 의료데이터기술분야 특허팀, 의료진단기술분야 특허팀, 생체측정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지능형로봇심사과) ① 지능형로봇심사과에는 로봇제어기술분야 특허팀, 로봇가공기술분야 특허팀, 산업로봇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지능형로봇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1조(자율주행심사팀) ① 자율주행심사팀에는 속도제어기술분야 특허팀, 조향제어기술분야 특허팀, 교통제어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2조(스마트제조심사팀) ① 스마트제조심사팀에는 3D프린팅기술분야 특허팀, 금속성형시스템기술분야 특허팀, 플라스틱가공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스마트제조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5장 전기·통신기술심사국

제23조(전기심사과) ① 전기심사과에는 전력변환기술분야 특허팀, 전동기기 기술분야 특허팀, 전자회로기술분야 특허팀, 전력송배전기술분야 특허팀, 전력공급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전기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4조(컴퓨터심사과) ① 컴퓨터심사과에는 컴퓨터응용시스템기술분야 특허팀, 검색데이터베이스기술분야 특허팀, 컴퓨터인터페이스기술분야 특허팀, 컴퓨터 제어기술분야 특허팀, 데이터처리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컴퓨터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5조(반도체심사과) ① 반도체심사과에는 에칭공정기술분야 특허팀, 증착공정기술분야 특허팀, 노광공정기술분야 특허팀, 기관공정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반도체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6조(통신심사과) ① 통신심사과에는 통신단말기술분야 특허팀, 보안프로토콜기술분야 특허팀, 전송시스템기술분야 특허팀, 이동통신 안테나기술분야 특허팀, 통신프로토콜 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통신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

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7조(디스플레이심사과) ① 디스플레이심사과에는 OLED기술분야 특허팀, 화상소자기술분야 특허팀, 화상구동기술분야 특허팀, 화상광학기술분야 특허팀, 광학기기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디스플레이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8조(전자상거래심사과) ① 전자상거래심사과에는 금융결제기술분야 특허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기술분야 특허팀, 전자거래기술분야 특허팀, 디지털콘텐츠기술분야 특허팀, 마케팅서비스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29조(전자부품심사팀) ① 전자부품심사팀에는 반도체소자기술분야 특허팀, 메모리회로기술분야 특허팀, 전자기기기술분야 특허팀, 기록송수신장치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전자부품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0조(방송미디어심사팀) ① 방송미디어심사팀에는 멀티미디어기술분야 특허팀, 방송시스템기술분야 특허팀, 영상압축기술분야 특허팀, 영상처리기술분야 특허팀, 오디오처리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방송미디어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

한다.

제6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

제31조(유기화학심사과) ① 유기화학심사과에는 기능성소재기술분야 특허팀, 바이오소재기술분야 특허팀, 유기소재기술분야 특허팀, 화학소재기술분야 특허팀, 화장품소재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유기화학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2조(약품화학심사과) ① 약품화학심사과에는 합성의학기술분야 특허팀, 바이오의약품기술분야 특허팀, 제제기술분야 특허팀, 천연물의약기술분야 특허팀, 정밀의약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약품화학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3조(기초재료화학심사과) ① 기초재료화학심사과에는 나노소재기술분야 특허팀, 촉매화학기술분야 특허팀, 경화처리기술분야 특허팀, 무기화학기술분야 특허팀, 세라믹스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초재료화학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4조(차세대에너지심사과) ① 차세대에너지심사과에는 이차전지기술분야 특허팀, 차세대전지기술분야 특허팀, 발광체기술분야 특허팀, 에너지변환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차세대에너지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5조(고분자섬유심사과) ① 고분자섬유심사과에는 고분자합성기술분야 특허팀, 고분자소재기술분야 특허팀, 고분자응용기술분야 특허팀, 유기화합물 기술분야 특허팀, 스마트섬유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분자섬유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6조(의료기술심사팀) ① 의료기술심사팀에는 의료용품기술분야 특허팀, 치료기기기술분야 특허팀, 보건위생기술분야 특허팀, 진단기기기술분야 특허팀, 의료시스템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의료기술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7조(환경기술심사팀) ① 환경기술심사팀에는 수질정화기술분야 특허팀, 오염물분리기술분야 특허팀, 재생자원기술분야 특허팀, 폐기물처리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환경기술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7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

제38조(일반기계심사과) ① 일반기계심사과에는 제동기계기술분야 특허팀, 기계요소기술분야 특허팀, 이송보관부품기술분야 특허팀, 계측기계기술

분야 특허팀, 광학부품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일반기계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39조(제어기계심사과) ① 제어기계심사과에는 공작기계기술분야 특허팀, 기계제어기술분야 특허팀, 제어가공기술분야 특허팀, 이송제어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어기계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0조(건설기계심사과) ① 건설기계심사과에는 국토기반기술분야 특허팀, 수자원환경기술분야 특허팀, 토목구조기술분야 특허팀, 해양플랜트기술분야 특허팀, 공기조화기기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1조(자동차심사과) ① 자동차심사과에는 차량새시기술분야 특허팀, 파워트레인기술분야 특허팀, 차량공조기술분야 특허팀, 조명장치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동차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2조(동력기술심사과) ① 동력기술심사과에는 동력변환기술분야 특허팀, 동력전달기술분야 특허팀, 동력제어기술분야 특허팀, 공작제어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동력기술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3조(운송기계심사과) ① 운송기계심사과에는 조선해양시스템기술분야 특허팀, 육상운송기술분야 특허팀, 항공우주시스템기술분야 특허팀, 정밀부품이송기술분야 특허팀, 운송기반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운송기계심사과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4조(계측기술심사팀) ① 계측기술심사팀에는 계측시험기술분야 특허팀, 광학측정기술분야 특허팀, 측정분석기술분야 특허팀, 측정시스템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계측기술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45조(재료금속심사팀) ① 재료금속심사팀에는 표면처리기술분야 특허팀, 금속도금기술분야 특허팀, 금속소재기술분야 특허팀, 재료분석기술분야 특허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특허팀장은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료금속심사팀의 특허분류 중 각 특허팀 소관 기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를 수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 2019.1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